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41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이병진・이기헌・장종태

박상혁 • 안태준 • 소병훈

권향엽 · 송옥주 · 문진석

양부남 • 임미애 • 이재관

이상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이 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액의 100분의 30이내
 - 2.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
 - 3.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생명, 신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 2.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어구, 선박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어

업인에 대한 지원

- 3.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쓰인 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원
- 4. 기금의 조성 ·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 5.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 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액의 100분의 30이내 2.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 3.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생명, 신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 2.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어구, 선박 등 물적 피해를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 3.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쓰인 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원
-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에 필요한 경비
- 5.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 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 <u>⑤</u>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⑥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